

---

「코로나19(COVID-19)」 관련

#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(9편)

---

2022. 5. 4.



고용노동부

산업안전보건본부  
산재예방지원과



## ‘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(9판)’ 개정 내용

### □ 주요 개정 내용

- (교육) 유예된 직무교육 이수기간 및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가능 일자 명확화
  - 직무교육 대상자의 교육 시작일자가 '22. 6. 30. 이전이라면 교육 종료 일자가 '22. 7. 1. 이후라도 직무교육 유예기간 내 이수한 것으로 인정
  - 실시간 화상교육의 경우 교육 시작일자가 '22. 6. 30. 이전인 과정 까지 허용
- (방역)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조정된 방역 수칙 적용
  - 행사·집회 모임 인원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교육 시 인원 제한기준 해제
  - 잠정 중단된 방역패스, 출입명부 관련 수칙 삭제
  -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('22. 4. 29., 제6판),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서('22. 4. 29., 제5판)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코로나 예방 자율 점검표(붙임1) 항목 완화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(붙임2) 관련 주요 내용 수정
  - 교육기관 내 확진자 발생 시 “사업장 내 확진자·접촉자 조사·관리 기준(붙임3)”에 준하여 관리
  -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환기 및 냉·난방기 사용 수칙을 추가하고, 여름철 올바른 환기방법에 대한 카드 뉴스(붙임3) 첨부

## □ 직무교육

- (이수기간 유예) 사업주가 직무교육 대상자\*에게 실시해야하는 직무교육의 경우 이수기간을 '22. 6. 30.까지 유예(과태료 면제)

\* '21. 6. 10. 이후 ①안전·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(위촉 포함)되거나 채용된 자 및 ②보수교육 대상자(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 초과자)

- 다만,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, 이수기간을 유예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
-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\*이 '22. 6. 30. 이후인 경우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을 따름

\* 안전·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(위촉 포함)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(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1개월) 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3개월  
↳ 예시) '22. 6. 1.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은 '22. 9. 1.

- 직무교육 대상자의 교육 시작일자가 '22. 6. 30. 이전이라면 교육 종료일자가 '22. 7. 1. 이후라도 직무교육 유예기간 내 이수한 것으로 인정

## □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

- (근로자)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근로자 정기교육 시 각 사업장의 업종·작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하되,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
- (관리감독자) 사업주가 관리감독자\*에게 교육시간의 절반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방법으로 실시해야하는 정기교육의 경우
  - \* '21. 6. 10. 이후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관리감독자
-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,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'22. 6. 30.까지 유예(과태료 면제)

## □ 기타 사항

- (실시간 화상교육\*) 사업주,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, 제32조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교육 시 집체교육을 대신하는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가능
  - 6판에서 유예한 안전보건교육 이수기간인 '22. 6. 30.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하며, 교육 시작일자가 '22. 6. 30. 이전인 과정까지 허용
  - ※ 실시간 화상교육 시 교육내용을 녹화하여 보존해야 함
  - \* '실시간 화상교육'이란 PC,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실시간 화상교육 플랫폼을 통해 강사·수강생 간 화상 수업하는 것으로서, 강사·수강생 간 실시간 토론 및 소통을 할 수 있는 동시적 원격교육을 말함
  
- (모바일교육\*) 사업주가 근로자·특고 안전보건교육 시 ①「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129호)」별표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체적인 학습관리시스템을 갖추고, ②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\*\*를 하는 경우, '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안전보건교육(모바일교육)' 가능 (6판에서 유예한 안전보건교육 이수기간인 '22. 6. 30.까지 한시적으로 가능)
  - ※ 사업주가 직접 교육하는 경우만 모바일교육이 가능하며,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는 경우 모바일교육은 불가능
  - \* '모바일교육'이란 인터넷원격교육의 한 종류로서, 교육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녹화강의 시청 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비동시적 원격교육을 말함
  - \*\* 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
    - ①모바일교육 수강 시 '작업 중 수강금지', '운전 중 수강금지' 내용 공지할 것
    - ②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기능 또는 장치를 갖출 것
    - ③작업 또는 운전 중에 교육 수강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교육을 중단하고, 모바일 교육에서 배제할 것
    - ④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
  
- (기본인력 강의 점검 유예) 고용노동(지)청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점검 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을 '22. 6. 30.까지 유예
  
- (교육일정 조정) 직무교육기관은 특정 기간에 교육일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안전보건공단에 교육일정 변경을 요청하고, 안전보건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직무교육 일정 조정

- (평가시 불이익 금지) 안전보건공단은 기관 평가 시 코로나19로 인한 「감염병 재난」 상황을 고려하여 직무교육 취소나 연기 등의 사유로 직무교육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

[참고] 교육대상별·교육유형별 안전보건교육 시간

구분		신규교육	정기교육 / 보수교육	작업내용 변경 시 (1회)	특별교육 (1회)
근로자	일반	▶ 8시간	▶ (일반) 분기별 6시간 ▶ (사무직) 분기별 3시간	▶ 2시간	▶ (일반)16시간 ▶ (단기간·간헐적 작업) 2시간
	일용	▶(일반) 1시간 ▶(건설업) 4시간	-	▶ 1시간	▶ (일반) 2시간 ▶ (타워크레인 신호 업무) 8시간
	관리감독자	-	▶ 연 16시간	-	-
안전 보건 업무 담당자	안전보건관리 책임자	▶ 6시간 이상	▶ 6시간 이상(2년 주기)	-	-
	안전관리자/ 보건관리자	▶ 34시간 이상	▶ 24시간 이상(2년 주기)	-	-
	안전보건 관리담당자	-	▶ 8시간 이상(2년 주기)	-	-
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	일반	▶ 2시간	-	-	▶ 16시간
	단기·간헐	▶ 1시간	-	-	▶ 2시간

## □ 공통사항

## ○ 인원 기준

-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(22. 4. 18.)로 행사·집회 모임 인원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교육 시 인원 제한기준 해제

\* 단, “시설 내 밀집도 완화” 원칙 하에, ①테이블 간 1m 이상 간격 유지 또는 ②좌석 한 칸 비우기 또는 ③칸막이 설치 또는 ④시설 특성에 맞게 교육생 간 충분한 간격 유지 환경 조성 등을 사업장(교육기관 포함) 특성에 맞게 적용

## ○ 사업장 및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방역담당자는 교육장에 감염병 예방 수칙 안내문을 부착하고 손 세정제 및 마스크를 비치

- 교육장, 공용물품, 손잡이 및 난간을 주기적으로 소독(일 1회 이상) 및 환기(일 3회 이상)
- 교육 참석자에게 교육전 개인위생 실천방안(손 소독, 마스크 착용, 기침예절 등)을 안내한 후 준수 여부를 시간대별 확인

## ○ 사업장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방역 담당자는 자율점검표(붙임1)를 활용하여 매일 방역 관련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

- 강의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시간대(오전·오후 등)에 교육과정을 추가로 편성하거나 교육장소를 별도로 마련하여 실시
-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(붙임3)에 따라 신속히 조치

## ○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, 상시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주기적으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, 환기 설비를 가동

- 창문 환기 시 창문을 동시(외기, 복도)에 열어 환기량을 최대로 할 것

## ○ 냉·난방기(공기청정기 포함) 사용 시, 수시로 환기 실시

\* 냉난방기, 공기청정기 사용 시 실내공기 재순환을 비밀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주 환기하고 풍향 및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

## □ 안전보건교육기관

- (사전안내) 교육시작 전에 반드시 코로나19 관련 손소독, 마스크 착용,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(붙임4)
- (유증상자) 교육 중 발열(37.5℃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는 교육생(유증상자)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(만 60세 이상)에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를 받도록 안내
- (확진자) 교육생, 교육기관 종사자 및 방문자 중 확진환자 발생 시 사업장을 소독하고 확진환자 발생 사실을 교육생들에게 공지 및 사업장 내 확진자·접촉자 조사·관리 기준(붙임3)에 준하여 관리
  - \*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접촉자는 확진자의 동거인, 확진자가 감염 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를 의미하며, 이외 시설·개인의 접촉자는 보건소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기관 자체 매뉴얼에 따르거나 자율 관리
- (교육생 출결 관리) 교육기관은 교육생인 확진환자가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격리를 한 경우 격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출석(교육 수강)으로 인정
  -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를 실시한 교육생으로서 그 검사 결과가 음성인 교육생은 교육에 복귀하도록 조치(미복귀 시 출석으로 미인정)



### 3

## 감독·점검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관련

- (원칙)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는 근로자가 본인의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통해 확인
- (심층 인터뷰 등) 근로자가 사전 예방조치(안전·보건조치 등)와 사후 피해 방지조치(대피요령 등)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\*
  - \* 대부분의 근로자가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숙지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 등 생략 가능
  - 심층 인터뷰\*는 무작위로 선정 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,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근로자 대부분이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 실시 불인정\*\* → 과태료 부과
    - \* 교육 내용 중 기본적인 사항이나 그 사업장 및 해당 근로자의 작업에 필수적인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사항, 교육 강사나 교육 장소 등에 대해 질의
    - \*\* 근로자가 답변을 하지 못하더라도, 사업주가 교육실시 여부를 소명하는 경우 이를 검증하여 교육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

### 4

## 시행시기

- (시행시기) '22. 5. 4.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



〈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〉

- 법적근거,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
  - (법적근거) 감염병예방법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, 제83조(과태료)
  - (행정명령기간)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“경계·심각”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(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
  - (과태료 부과) 계도기간 1개월('20.10.13.~'20.11.12.)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
    - ※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,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
  - (과태료 금액)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, 관리·운영자 300만원 이하(1차 50만원, 2차 100만원, 3차 이상 200만원)
-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·대상
  - (착용 의무) 실내 전체 및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(참석자),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·스포츠경기(관람객) 시 마스크 착용
    - \* 실내란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
  - (관리 의무)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는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의무 (거리두기 조치 외 시설은 지자체별 추가 가능)
- 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
  - (마스크 종류) 식약처에서 ‘의약외품’ 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등), 비밀차단용 마스크(KF-AD), 수술용 마스크 강력 권고 그 외 천면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, 전자식 마스크 가능
    - \*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
    - ※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, 넥워머,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
  - (착용법)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
    - \*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
-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상황

예외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</li> <li>· 뇌병변·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</li> <li>·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</li> </ul>
예외 상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집,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</li> <li>·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</li> <li>· 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</li> <li>· 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</li> <li>· 수영장·목욕탕 등 물속·탕 안에 있을 때</li> <li>·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</li> <li>·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</li> <li>·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(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),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 및 사진 촬영(임명식, 협약식,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(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, 협약식 당사자 등) 최소한으로 한정), 수어통역을 할 때</li> <li>· 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</li> <li>· 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</li> <li>·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(예: 항공기 조종사 등)</li> <li>· 원활한 공무수행(외교, 국방, 수사, 구조,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)을 위해 필요한 경우</li> </ul>

□ 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 시 대응방안

- 확진자 본인이 사업장 방역관리자에 즉시 신고
- 확진자 발생 확인 즉시, 방역관리자는 확진자의 복무관리자에 통보 조치, 사업장 내 공지 및 접촉자 조사 실시
- 확진자 업무복귀 기준 안내
  - 7일 격리 후 3일간은 주의기간으로, 수칙을 지키며 출근 가능
  - \* 주의기간 수칙 :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상시 착용,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(다중이용시설, 감염취약시설 등) 이용(방문) 제한 및 사적 모임은 자제

**<접촉자 대상자별 관리방안>**

■ 사업장 내 접촉자 조사·관리 우선순위

우선순위	접촉자 조사 대상
1순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확진자와 동일 공간(기숙사 또는 숙소)에서 생활하는 구성원</li> </ul>
2순위	(확진자의 증상 발생일(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)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</li> <li>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</li> </ul>
3순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동일 공간(부서)에서 근무하는 구성원</li> <li>* 방역수칙 준수 하 회의 참석자는 3순위에서 제외</li> </ul>

※ 상기 사항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

**1순위 : 확진자와 동일 공간(기숙사 또는 숙소)에서 생활하는 구성원**

- ① **확진자는 별도 격리공간으로 즉시 분리**
  - 확진자가 다수일 경우, 확진자끼리 동일공간 격리는 가능
- ② **확진자가 '기숙사 동일 호실 생활자'를 동거인 신고하도록 안내하여 보건소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**
  - 기숙사의 동일 호실 생활자는 확진자의 동거인으로 보건소의 '조사대상 접촉자'임
- ③ **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**
  - 수동감시 : 관할 보건소에서 수동감시 대상자에게 수칙을 안내하고 준수를 권고하고, 수동감시 대상자는 수칙을 자율 준수하는 관리 방식

**2순위 :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식사, 15분 이상 대화 등**

- ① 확진자 격리기간 동안 증상 관찰 ⇒ 유증상 시 동네 병·의원 검사·치료
- ② 신속항원검사(개인용), 인지시 및 인지후 6일차의 총 2회 실시
- ③ 인지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(개인용) 결과 음성이면 출근 가능

### 3순위 : 동일 공간(부서)에서 근무하는 구성원

- ① 확진자 격리기간 동안 증상 관찰 ⇒ 유증상 시 동네 병·의원 검사·치료
- ② 신속항원검사(개인용) 실시
- ③ 증상 관찰하면서 출근 가능

#### □ 접촉자 대상자별 검사방안

##### ○ 만 60세 이상 또는 검사대상 지정 문자 받은 자\*

\*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, 해당 확진자로부터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은 자도 해당

- PCR 검사 우선순위로,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검사 가능

##### ○ 만 60세 미만

- 증상이 있는 경우, 동네 병·의원에서 의사 진료 후 의사 소견에 따라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또는 PCR 검사 실시

\* 의료기관 자체 PCR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, PCR 검사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발급받아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PCR 검사 실시

- 증상이 없는 경우,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실시

-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, 지체없이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또는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확인 전까지 자택 대기

#### 【주의사항】

-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(KF94 또는 동급 이상) 착용, 가능한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
-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, 자차 등을 활용하여 이동

-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고, 필요 시 주기적으로 반복 검사

※ 특히, 만 60세 이상 고령자, 고위험 기저질환자, 면역저하자의 경우 조기 진단·치료가 중요하므로, 진단검사 적극 실시 독려

## □ 일반국민 행동수칙

질병관리청 2020.11.19

# 코로나19 일반국민 행동수칙 10

인플루엔자 예방

- ① 실내 시설, 밀집된 실외에서는 **반드시 마스크 착용**하기  
\*일반관리 시설, 대중교통, 집회, 시위장, 의료기관약국,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, 종교시설, 실내스포츠 경기장, 고위험 사업장, 지자체에 신고·협업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서는 **마스크 의무적으로 착용**
- ② 흐르는 물에 **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**
- ③ 환기가 안되고 **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 자제**하기
- ④ 사람과 사람 사이, **두 팔 간격 2m(최소 1m) 거리두기**
- ⑤ 씻지 않은 손으로 **눈·코·입 만지지 않기**
- ⑥ **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**
- ⑦ 매일 주기적으로 **환기**하고 자주 만지는 **표면은 청소·소독**하기
- ⑧ **발열, 호흡기 증상**(기침이나 호흡곤란 등)이 있는 사람과 **접촉 피하기**
- ⑨ 매일 본인의 **발열,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확인**하기  
\*다양한 주요 증상 : 발열(37.5°C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 소실 등 그 외에 피로, 식욕감소, 가래, 소화기 증상(오심·구토·설사 등), 어지러움, 콧물이나 코막힘 등
- ⑩ **필요하지 않은 여행 자제**하기



## □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

# 코로나19·인플루엔자 동시유행 시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

### 일반수칙

- 실내 시설, 밀집된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
-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
- 꼭 필요한 경우(병원 방문 등) 외 외출을 자제하되 부득이한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
- 타인과 접촉 최소화 및 사람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가지 않기

### 가정 내 주의사항

-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, 가족 또는 동거인과 거리 두기(2m)를 지키기  
\* 특히 고위험군(영유아, 고령자, 만성질환자 등)과 접촉 피하기
- 개인물품(개인용 수건, 식기류, 휴대전화 등)은 따로 사용하기
-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매일 청소·소독하기

### 의료기관 방문 시 주의사항

-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발생 시 선별진료소, 호흡기전담클리닉,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받기
- 의료기관에 방문하려면 먼저 전화로 증상을 알리고 사전 예약하기
- 선별진료소,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,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

###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복용자 주의사항

-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서 발열 등의 임상증상 확인하기
- 항바이러스제 복용 후 열이 떨어지면, 24시간 동안 추가로 더 이상 증상이 없으면 등원, 등교, 출근하기
- 약제 복용 24시간 이후에도 발열,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면 검사의뢰서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기

# □ 마스크 착용(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)

# 마스크 착용!



## 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



★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 
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.

### “ 마스크, 반드시 착용하세요! ”

실내

▪ 상시 마스크 착용

실외

▪ 집회·공연·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 
거리 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

▪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



### 마스크,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!

올바른  
마스크 착용법

✓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 
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

※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,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 
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

착용 가능한  
마스크의 종류

✓ 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등),  
비말차단용 마스크(KF-AD) 및 수술용 마스크

✓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·면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

※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 
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



□ 올바른 환기 카드 뉴스(올바른 환기 방법)

2021.07.05. 질병관리청

## 여름철 나와 우리를 위한 올바른 환기 방법!

기본 환기 3원칙  
에어컨 가동 시 3원칙

1/8

2021.07.05. 질병관리청

##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비말(침방울)을 타고 사람에게 전파되거나 물체의 표면을 오염\*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공기 전파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.

\*일상생활의 90%를 머무는 실내의 환기가 부족하면 외부환경보다 최대 10배 오염 될 수 있음

2/8

2021.07.05. 질병관리청

## 비말 유입자를 이용한 공기확산 시뮬레이션 실험에서

실내로 유입된 외부공기가  
넓은 면을 통해 원활하게 배출(뚫풍)될 때  
비말 유입자가 빨리 감소\* 될 수 있습니다.

### 즉, 환기량이 증가할수록 비말이 빠르게 감소됩니다!

\*비말유입자 감소시간이 40분에서 25분으로 감소

3/8

2021.07.05. 질병관리청

## 충분한 환기를 위해 먼저 확인하세요!

사람 수

창문 크기

바람의 경로

사람이 많고, 창의 크기가 작고,  
바람이 적다면  
더 잦은 환기가 필요합니다.

4/8

# 기본 환기 3원칙!



## 1일 최소 3회(10분) 이상 창문 열어 환기하기

\*밀집도가 높은 공간이라면 더 자주 환기를 해주세요



## 맞통풍이 일어나도록 문과 창문 동시에 여러 개 열기

\*맞통풍을 유도해 신선한 공기가 실내에 들어오게 하고 창문을 넓게 열기 어려울 경우 지속적인 환기를 시킵니다



## 냉방 중에도 주기적으로 환기하기

\*냉방 중에 환기하지 않으면 비말이 재순환 되면서 감염 확산 위험이 높아집니다.

# 하절기에 에어컨 가동 시 3원칙!



## 에어컨 가동 시 최소 2시간마다 1회(10분 이상) 환기하기

\*밀집도가 높고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공간은 더 잦은 환기 필요



## 풍향은 사람이 없는 방향 천장 또는 벽으로 풍량은 가능한 약하게 설정하기



## 대중교통, 공동이용 승합차 운영 시 창문을 지속적으로 조금 열어두기

\*차량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

# 창문 환기가 어려운 곳에서는 어떻게 할까요?

환기는 여러 개의 창문을 열어 맞통풍 시키는 것이 좋지만 창문이 없는 지하 등에서는 다음을 지켜주세요!

- ☑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(강의, 노래 등)을 자제합니다
- ☑ 머무는 동안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합니다
- ☑ 방문 시간을 가능한 짧게 합니다
- ☑ 환기설비가 없는 경우 주방 후드나 욕실 배기팬 등을 이용하여 환기합니다

이 때, 선풍기를 활용하여 정체된 공기가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흐르도록 하여 환기를 촉진합니다

밀폐된 공간에서 감염자에 대한 노출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염 위험\*이 높아집니다

# 여름철 나와 우리를 위한 올바른 환기방법을 기억하세요!

기본 환기 3원칙  
에어컨 가동 시 3원칙

\*노출시간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난다면 감염위험이 2.2배 증가하고 6시간으로 늘어난다면 3.4배 증가합니다.